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76-000018-01

2014 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방의원 워크숍

- 일시 : 2014년 9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



세 부 일 정

시 간	내 용
진 행 : 고애순(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14:00~14:20	[인사말] 황정모(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조영표(광주광역시의회 의장)
14:20~15:00	I. 나만의 특별한 의정활동 : 인권위 진정사례에서 답을 찾다. 문은현(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사무관)
15:00~15:50	II. 영화 속 인권이야기 : 당신이 인권 실천의 주인공입니다 김민아(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15:50~16:00	[휴 식]
16:00~17:20	III. 지역 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 김광모(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원) [발표 1] 광주광역시 복구 인권정책 및 조례의 특징에 관하여 신수정(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발표 2] 광주가 주목해야 할 인권의제 김기곤(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7:20~18:20	[자유발언 및 종합토론]
18:20~19:00	[저녁식사 후 폐회]

목 차

I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권고사례 / 문은현 3
II	영화 속 인권이야기 : 당신이 인권 실천의 주인공입니다 / 김민아 27
III	인권제도화와 지방의원의 과제 / 김광모 37
발 표 1	광주광역시 복구 인권정책 및 조례의 특징에 관하여 / 신수정 79
발 표 2	광주가 주목해야 할 인권의제 / 김기곤 91
부 록	1.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05 2.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13 3.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117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권고사례

문 은 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사무관

I . 지방자치단체와 인권

1.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미

인권의 의미는 세계 공동체의 주된 관심사였고, 이러한 관심사는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 인류의 인권의 일들을 책임지고 추진하였지만 각 국가의 모든 인권문제를 유엔이 일일이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유엔은 1970년 대 이후 각 국가에 설립되어온 국가인권 기구를 통하여 국가적 차원을 인권실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인권 보장은 세계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국가차원으로 관심사가 이동되면서, 한 국가의 지방 차원의 인권실현에 주목하는 흐름도 형성되었다. 시민들의 생활밀착형 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의제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형성하여야 된다는 취지였다.

생활밀착형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인권의 주체가 스스로 인권규범을 만들고 이행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기관으로 특히 사회권의 경우에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을 담당하고 있기에 지자체의 역할을 인권실현을 위해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인권의 이행체계 >

	세계	지역	국가	지방
규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지역인권규약 (유럽인권협약 등)	헌법, 인권관련 법령	인권 관련 조례
기구	국제인권기구	지역별 인권기구(유럽인권 재판소 등)	정부, 국가인권위 원회	지자체(인권전담 부서 등)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말부터 올해 9월 현재 3083건으로 매년 200~300여건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인권위 전체 진정건수의 4.7%를 차지한다. 그동안 인권위가 지자체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을 고려한다면 잠재된 인권침해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자체 사건들을 인권위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설립한 인권옴브즈만 기구를 통하여 지자체가 직접 처리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가능해 질 것이다.

2. 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정책의 방향

1) 인권보장체계에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변별점 확보

우선 인권위와 중앙정부, 지자체 인권보장체계와 그 운용에 있어 어떤 변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인권위는 보편적 인권규범의 원칙 아래 넓게는 시민권의 보장, 좁게는 기본권의 보장을 꾀한다고 할 때, 그 활동의 주요한 집중 점은 인권옹호자(advocacy)로서의 활동이라 할 수 있고, 이는 현실에서 사전 예방적이든, 사후적이든 권리구제 활동으로 모아진다. 서울시와 광주시의 경우도 인권옴브즈만을 만들어 인권옹호자로서 광주시민들의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인권보장체계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의 축소’라고 해석하며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지자체 주민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한 가운데 존중(respect)하고, ‘보호

(Protection)’하며, ‘증진(Promotion)’하는데 주력하면 되는 걸까? 지자체가 인권 옴브즈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리구제 권한 행사가 어려워 차 제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세민 취로사업, 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같은 업무를 확장하면 그것이 곧 인권행정이 되는 것인가?

인권행정이란, 인권관련 행정서비스의 양과 폭을 확대하기에 앞서, 지자체라는 공간에서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지자체가 어떤 촉진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방향에서 중앙정부차원의 인권보장체계와 그 변별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주민들에 대해 보다 폭 넓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매우 복잡한 역할을 감당할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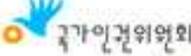
2) ‘인권 옹호자’ 가 아닌 ‘인권 촉진자(facilitator)’ 의 역할 필요

지자체의 주요 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들로써 주로 의료, 보건, 위생, 안전, 주거, 노동, 교육 등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사회권적인 문제들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중앙정부의 인권보장체계와 ‘같으면서도 또 다른’ 책무를 부여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권정책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자유권-사회권-환경권이라는 순서로 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지자체에서 가장 시급한 인권문제를 실태조사를 통하여 먼저 확인한 다음 우선순위를 정하여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공무원인 내가 인권친화적인 도시공동체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어떤 순서와 과정으로 추진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인권정책 업무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촉진자는 ‘심판자’가 아니므로 합의, 조정, 알선, 중재, 비공식 해결 등 대안적 갈등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비사법적 권리구제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옹호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인권감수성이나 전문성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인권역량이 요구되는 물론이다. 따라서 인권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전문역량을 항구적으로 배가하고자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II . 지자체 관련 인권위 권고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문은현 사무관

Contents 



- 국가인권위원회 및 조사대상 구제방법 소개
-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 지자체 관련 인권위 권고 내역

국가인권위원회 및 조사대상·구제방법 소개



1 3 3 1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설립목적(「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

2001. 11.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독립 국가기구이자 준 사법 기구이며, 준 국제기구인 종합적 인권전담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기능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 정책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표명
국제 인권 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 표명

2 조사 및 구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구급·보호 시설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3 교육 및 홍보

국민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4 국내·외 협력

국내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 3 3 1

진정 접수 및 처리 절차

<http://consult.humanrights.go.kr>



3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

·진정사례: 판사의 막말

·버릇없다!!



·진정사례: 키가 작으면 루저(Loser)?

- 키 158cm가
- 너무 작다는 이유로
- 결혼정보회사 2곳에서
- 회원가입을 거부



·진정사례: 외국인의 인격권



- “아~ 더러워, 어디서 왔어?
·이 냄새 나는 XX야!!”
- 버스에서 -
- “반말투, 인종차별적 발언,
·나이와 직업을 반복적으로 질문”
- 경찰조사 -

·인신 매매성 결혼광고



뉴스 > 경제 >

종합

인권위, "베트남 여성과 결혼에 980만원" 현수막 광고는 인권 침해

박민

기사입력 2011.03.13 14:26:42 | 최종수정 2011.03.13 14:40:39

인사이드 큐어투데이 블로그

북경 국가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광고 현수막 등을 내거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고 게시대에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국제 결혼 현수막을 부착한 안성 시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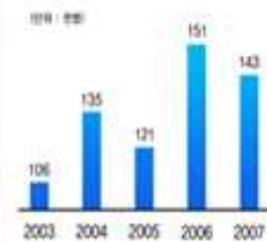
·진정사례: 남성 가사전업자의 비애

·남성 가사전업자에게는 여성 가사 업자와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



■ 남성 가사자 추이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진정사례: 젊은 여성만 채용한다?



-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 시
- 용시연령을 만 **23~25세**로
- 제한하는 것은
- 나이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



지자체 관련 진정사례

* 진정내용



❖ 진정인(남,64세)은 2012. 2.10. A법원 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공개토론회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청사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불허하지 인권위 진정을 제기함.

* 권고내용



-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A법원장에게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되는 재판의 공개행사의 관리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진정내용



❖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업무 추진비, 사회복지시설보수공사, 성과 금지급, 직장협의회 문제 등을 제기 하는 등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한 것은 부당



권고내용



- 헌법상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임
-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재전입 조치하고 진정인에게는 진정 내용을 다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합의 권고함



진정내용



퇴폐영업술집에 여성 근로자를 배
석시킨 것이 성희롱인지 여부



권고내용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 가해자의 성적의
도는 성희롱판단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성
적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성적 발언이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함



진정내용



❖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적채의 해소와 쇄신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인격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권고내용



진정인을 면직시킬 객관적, 합리적 자료가 없고,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면직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시직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 인권침해임



진정내용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지문등록시스템 도입



권고내용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을 위해 제한되는 사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남.



진정내용



❖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자료 (질병, 수형)를 복무관리에 활용**



권고내용



→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 진정내용



❖ Car Earing 제도

- ◆ 차량에 체납사실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체납과태료 완납할 경우 이를 제거
- ◆ 사회적 비난, 명예심을 자극하여 징수

❖

* 권고내용



→ 도입목적은 정당하나 명예,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 필요

- ✓ 행정법상 법 위반사실의 공표
- ✓ 도로교통법 등에 법적 근거



진정내용



서울광장 출입제한 (전동휠처 장애인)



권고내용



- ◆ 전동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를 대신
 - 잔디가 손상될 수 있겠으나 공공시설을 향유하고 즐길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위한 본질적 권리
 -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월한 다른 가치의 실현이 요구되는 바, 잔디손상이라는 이유로 서울광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음
- ◆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진정내용



•시청민원실 지하 구내식당은 계단으로만 출입하도록 돼 있어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 이용할 수 없음.



권고내용



▪**장애인 차별**



진정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없거나,



진정내용



△ 점자블록, 축지도 등 시설 구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고,
△ 수화통역 등을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 보호자 동반을 요구받는 등 차별을 당했다” 며, 진정을 제기



권고내용



△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청각 또는 발달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권고내용



△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 자료, 보조인력 배치,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 등을 권고



진정내용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로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진정



권고내용



◆장애인 차별

- A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에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을 투입
- 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진정내용



❖ 욕설을 하는 민원인에게 “0년 아, 00랄 년 아니야 이거 완전히 정신병자여 너”



권고내용



→ **주의조치 권고**

- ◆ 욕설의 종류, 내용, 음량의 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민원인의 업무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의 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
- ◆ 업무상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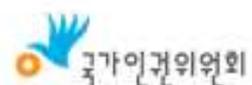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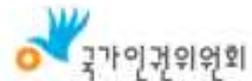




영화 속 인권 이야기 : 당신이 인권 실천의 주인공입니다.

김민아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물대포도 두렵지 않다...춤추고 폭죽쏘며 발랄한 저항



공공장소 피갑 허용-입맛좋은 금지
전근대적 이슬람주의 추진 했잖나
젊은 여성-축구 시모리스 손잡고
농담과 춤-노래-폭죽으로 맞선다

한국 촛불시위처럼 촉매같은 저항
문제는 정치적 출구 안보인다는 것
선거는 없고 야당은 믿을 없어
그래도 시민불복종사 새장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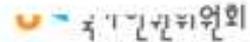
■ 전근대, 현대, 탈현대가 섞이다

최근 위키피디아에 신조어 '차불림'
chabulrim 또는 capulim이 등장했다. '평화롭
고도 웃기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행동'을 뜻한다고 위키피디아는 설명한다.

신조어 저항권의 일부는 예브도안 총리에게
있다. 지난 2일 그는 반정부 시위대를 영공했다.
"자불림(chabulim)을 할만큼 수 없다. (정치권위
재정압에 대한 그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나는 이미 2023년 총선에서 국민 50%의 지지를
받았다" 하니까 '자불림'은 답답사를 뜻한다.

테키 시인들은 총리의 발언을 비꼴았다. 브
뤼어-제이스북 등을 통해 "나도 자불림이다"
고 밝히는 연대-지지 활동이 이어졌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도 등장했는데, 그만 허
키어를 잘못 사용했다. "차불림은 모든 곳에 있고,
저항도 모든 곳에 있다. 나도 자불림(chabulim)
이다" 이로부터 테키 시인들은 '평화를 위해 싸운
다는 뜻의 동사 '자불림(chabulim)을 만들어내고,
그 병사행진 '차불림'을 탄생시켰다.

반정부 시위의 진정성, 이슬람주의 확립관
에는 경찰 불도저 부속물을 끌어 만든 '차불 나
무'가 생겼다. "나는 매일 자불림이다"고 적힌 흰
색 티셔츠는 '비스트 레보 아이템'에 사고 싶은
물건으로 매출과 128만7999원씩 4000원에 팔
리고 있다.



물대포도 두렵지 않다...춤추고 폭죽쏘며 발랄한 저항



공공장소 피갑 허용-입맛좋은 금지
전근대적 이슬람주의 추진 했잖나
젊은 여성-축구 시모리스 손잡고
농담과 춤-노래-폭죽으로 맞선다

한국 촛불시위처럼 촉매같은 저항
문제는 정치적 출구 안보인다는 것
선거는 없고 야당은 믿을 없어
그래도 시민불복종사 새장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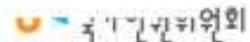
■ 전근대, 현대, 탈현대가 섞이다

최근 위키피디아에 신조어 '차불림'
chabulrim 또는 capulim이 등장했다. '평화롭
고도 웃기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행동'을 뜻한다고 위키피디아는 설명한다.

신조어 저항권의 일부는 예브도안 총리에게
있다. 지난 2일 그는 반정부 시위대를 영공했다.
"자불림(chabulim)을 할만큼 수 없다. (정치권위
재정압에 대한 그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나는 이미 2023년 총선에서 국민 50%의 지지를
받았다" 하니까 '자불림'은 답답사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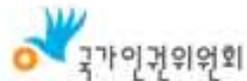
테키 시인들은 총리의 발언을 비꼴았다. 브
뤼어-제이스북 등을 통해 "나도 자불림이다"
고 밝히는 연대-지지 활동이 이어졌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도 등장했는데, 그만 허
키어를 잘못 사용했다. "차불림은 모든 곳에 있고,
저항도 모든 곳에 있다. 나도 자불림(chabulim)
이다" 이로부터 테키 시인들은 '평화를 위해 싸운
다는 뜻의 동사 '자불림(chabulim)을 만들어내고,
그 병사행진 '차불림'을 탄생시켰다.

반정부 시위의 진정성, 이슬람주의 확립관
에는 경찰 불도저 부속물을 끌어 만든 '차불 나
무'가 생겼다. "나는 매일 자불림이다"고 적힌 흰
색 티셔츠는 '비스트 레보 아이템'에 사고 싶은
물건으로 매출과 128만7999원씩 4000원에 팔
리고 있다.





내 생각을 말하자면,



한겨레

2014년 04월 02일 수요일 035면 오피니언

후진적 인권수준 드러낸 '사랑' 말뚝 변경

사건은 언어 사용의 기본 노릇을 한다는 말에서 말쑥 법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이 잘못을 어떻게 그러느냐에 따라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사랑'에 관한 뜻풀이가 이상어를 기본으로 삼은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이 일고에 알려졌다. 언어 사용에서 차별을 없애고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에 책음이 깊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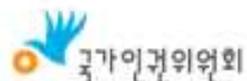
국립국어원은 2012년 "이상어 중심적인 언어가 소수자 차별을 낳는다"며 사람의 정서를 바꾸자는 계산을 받아들여 사랑을 비롯한 연애·재물·연인·재인 등 다섯 단어의 뜻을 상 중립적으로 바꾸었다. 그랬다가 기록보존체 등 일부에서 "중성어를 표상한다"며 재수정을 요구하자, 결국 1월 사랑의 뜻을 2012년 개정 이전으로 되돌렸다. 이에 따라 '사랑'은 "어떤 상대의 재물에 몰려 얽매지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에서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뜻풀이가 다시 바뀌었다.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뜻이 이상어로 한정되고 만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원상회복에 대해 "사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사랑에 니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이야말로 성차 관련 언어인

성의 부재를 보여준다. 이상어는 정상이고 성소수자의 사랑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투쟁가행들이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지도를 내다잡은 한 발자국을 되돌려야 한다"며 재수정을 규탄하고, 국제앰네스티 대 학생대표회도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포용하지 못하는 언어는 그 자체로 인간에 대한 차별이다 폭력"이라고 비판한 것에 국립국어원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콜라본의 <국70>에는 우리가 흔히 '콜라보너 리브'(콜라본적 사랑)라고 부르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콜라본은 연상의 남자가 연하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합니에서는 잘 띄어 열매로서 상대방을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사랑의 주체들은 남자-여자가 아니라 남자-남자다. 콜라본적 사랑에서도 말할 수 있듯이 사랑의 형태는 여러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정한 형태만을 정식으로 고집하게 되면 배려와 자별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된다.

국립국어원의 윤리현장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소용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언어에 대한 차별과 소지가 없는 다원적 언어정책 수립에 노력한다"는 구절이 있다. 이 윤리현장에 맞게 국립국어원은 과거 화기 행위를 심할하고 언어 속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태균 ‘검은 얼굴 흰 치아’ 발언 인종차별”

인권위, 구단에 재발방지 공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프로야구 한화아글스 소속 김태균(32·사진)씨의 인종차별 발언 논란과 관련해 KBO(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에 재발방지 교육을 권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문에서 “김씨의 사과로 마무리되기는 했으나, 위원회의 판단으로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사료된다”며 “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에, 선수 및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종차별 등 각종 인권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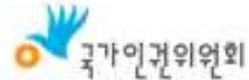


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야구 대담 프로그램에서 발표된 ‘까다로운 투수’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젊은 유민(롯데 자이언츠의 경우 마운드에서 웃을 때 흰 치아와 공이 겹치기 때문에 타격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해 인종차별 논란을 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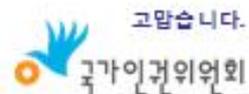
인권위는 “다양한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종차별적 행위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감을

김혜진 기자



모두를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모두.
사려 깊은 개인들의 예민한 감수성이 차별을 예방
유연한 언어와 사고의 탄력성, 건강한 문화를 생성.

작가는 펜을 현재의 암흑에 담그며 써 내려갈 수 있는 자
-조르조 아감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맙습니다.



해운대구 인권 증진 기본계획

김 광 모

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원

I. 해운대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목적과 방법

- 해운대구는 지자체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도시임. 실질적인 의미의 인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이런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역현황분석, 인권관련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인권도시 비전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수립,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과 절차는 문헌연구, 해운대구 주민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 간담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쳤음

연구단계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 계획 수립 단계	기초 조사(해운대구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 문헌 분석
	연구 방향 및 내용 설정	
이론 및 사례분석 단계	인권개념과 인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분석 연구진 회의
	인권도시 사례 분석	
해운대구 현황 및 인권 문화 조사 단계	해운대구 인구, 사회 환경적 여건, 정책 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분석
	해운대구 인권 문화 수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분석
인권 지표 체계 개발 단계	인권 지표 개념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분석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 공청회
	인권지표 체계적 구상	
	인권지표 타당성 검토	
	인권지표 최종안 확정	
인권 도시 전략 및 과제 수립 단계	인권지수, 실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내용 분석 및 정리 연구진 회의 해운대구청 의견 수렴
	인권도시 계획	
	인권도시 협력 네트워크	
	인권교육 학습 체계	
완성 제출	최종 수정 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보고회

II . 인권과 인권도시의 개념

1) 인권

- 인권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자연적·천부적 권리이자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세계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로서의 의미를 지님

2) 국제 사회의 인권환경 변화

-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 확산, 세계화의

흐름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 등으로 확대 됨
- 생활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인권이 강조되는 경향
- 국가 단위에서 지역 및 도시 단위의 인권 실현 방안이 필요하게 됨

3) 우리나라의 인권환경 변화

- 1987년 민주화 이후 인권에 대한 자각과 요구가 매우 증가하였음
-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적 환경 변화
- 도시 생활 중심이 확대되면서 국가 단위의 인권 실현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도시 단위의 인권 실현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인권 조례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각 지자체의 제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4) 인권 도시의 의미와 특징

- 도시에 대한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가 인권도시라고 할 수 있음
- 시민의 참여가 중시됨
- 정태적인 도시가 아니라 동태적인 도시임
- 인권과 관련된 교육과 학습 도시임
- 도시 차원의 거버넌스 실현이 필요함
- 도시 운영의 새로운 원리를 모색함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과 계획이 필요함
- 시민, 지자체 등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가 제시되어야 함
- 시민과 지방정부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함
- 도시 간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실천 가능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

III. 해운대구 지역배경과 현황

- 자연환경 : 산과 바다 등 아름다운 절경을 보유하고 있음.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음. 따라서 질병 관리가 필요하고, 재해 예방을 충분

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문화적 환경 :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 또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잘 갖춰져 있음. 하지만 해운대 내 지역 간 격차가 큰 편임. 따라서 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교육적 환경 : 교육열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교들이 많은 편임. 또한 교육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임
- 인구현상 :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 추세이지만, 노령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 양극화 및 지역 간 격차 문제 : 세계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극화가 나타남. 또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IV. 해운대구 인권의식 조사

1. 인권 태도

1) 인권에 대한 인지

-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인지 여부와 관련된 전체 평균은 2.71 정도로 잘 모르고 있음
-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58.0%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17.6%, ‘평등한 기회보장’이 14.9%의 순으로 나타남
- 인권도시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2.15로 아주 잘 모르고 있음

2)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 느낌

-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

인 평균은 3.01로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낀 적이 약간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타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은 3.63으로 타인인권 침해 경험이 약간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3) 해운대구의 인권개선활동을 위한 행동의지

- 인권개선활동을 위한 참여 전체 평균은 3.02로 참여의지가 약간 낮은 편임
- 영역별로 보면 ‘사회적 약자 위한 봉사’의 전체 평균이 3.26, ‘기타’가 3.20, ‘인권관련청원서명운동’이 3.13으로 다소 참여 의지가 낮은 편임. 반면에 ‘인권단체활동’은 2.85, ‘인권캠페인거리시위’가 2.67로 참여 의지가 약간 높은 편임.

2.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 해운대구의 인권상황

- 해운대구가 얼마나 인권을 잘 존중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평균은 3.16으로 약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분야별로 보면 ‘문화향유’가 전체 평균 3.19,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3.12, ‘노인복지’가 3.09, ‘안전할 권리’가 3.06, ‘아동청소년’이 3.05, ‘시민참여행정’이 3.01로 약간 존중받지 못하고 인식하고 있음. 한편 ‘다문화가정사회적응’은 2.99, ‘여성안전’이 2.94, ‘장애인재활’이 2.92, ‘빈곤층지원’이 2.86, ‘외국인노동자차별금지’가 2.82로 약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2) 해운대구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권 순위

- 응답자들이 1순위로 뽑은 것은 ‘범죄로부터의안전’이 36.7%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약자보호’가 33.5%, ‘살기좋은도시환경’이 14.4%, ‘문화를 누릴권리’가 6.4%, ‘재난으로부터의안전’이 5.3%, ‘시민의참여’가 1.6%, ‘교육받을권리’가 1.1%의 순위를 나타냄

- 응답자들이 2순위로 뽑은 것은 ‘사회적약자보호’가 28.7%로 가장 많았고, ‘범죄로부터의안전’이 21.8%, ‘재산으로부터의안전’이 14.4%, ‘살기 좋은도시환경’이 12.8%, ‘문화를누릴권리’가 10.1%, ‘시민의참여’가 5.9%, ‘교육받을권리’가 5.3%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3순위로 뽑은 것은 ‘살기좋은도시환경’이 27.7%로 가장 많았고, ‘재난으로부터의안전’이 16.0%, ‘사회적약자보호’가 14.4%, ‘문화를누릴권리’가 11.7%, ‘범죄로부터의안전’이 11.2%, ‘교육받을권리’가 9.0%, ‘시민의 참여’가 8.5% 순으로 나타남

3. 인권교육 경험 및 필요성

- 인권교육경험이 ‘전혀 없다’가 55.9%, 1~2회 정도가 31.4%로 대부분 인권 교육 경험이 적은 편이었음
- 인권교육필요성과 관련해서 ‘매우 필요하다’가 41.0%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필요하다’가 34.0%를 차지하여 대체로 인권교육의 수요가 높은 편이었음.

V. 인권도시 해운대의 비전과 전략

1. 현재 해운대구의 노력

- 해운대구는 2013년 구정목표를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로 정함
 - 인문학의 활성화로 사회적 자본이 확충된 품격있는 도시
 -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도시
 -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경제도시
 - 고유한 특색이 가득한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
 -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질 높은 생태환경도시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갖춘 사람중심도시
 -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창의선진행정도시를 지향함

○ 소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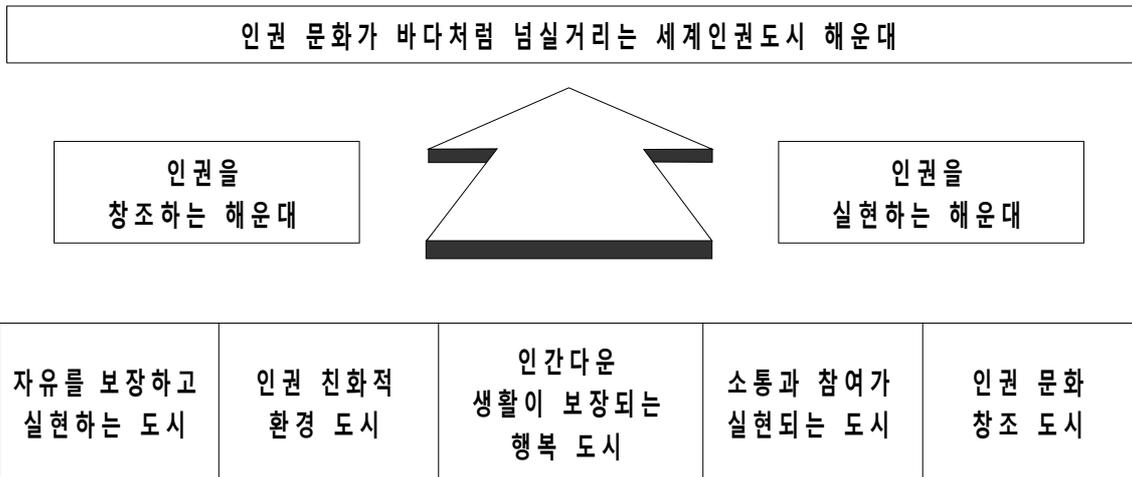
- 해운대구가 목표로 내세운 ‘사회적 자본 확충’은 인권도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도시의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실질적인 확충을 통해 인권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함
- 그러나,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호한 개념인 ‘사회적 자본’을 기초자치단체의 구정목표로 제시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
- 제도적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인 구청 내 인권전담부서 설치와 독립적인 인권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미흡함
-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과 같은 조직적 환경이 구축되어야함
-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해운대구 인권증진 조례’가 통과된 것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해운대구는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 중 법적 기반은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조직적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인권도시 해운대의 SWOT 분석

강점_ Strength	약점_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구는 상대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사회·경제·환경, 문화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 ○ 해운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음 ○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장산, 동백섬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님 ○ 해운대구는 국제회의도시, 관광도시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구는 도시 발전 과정에서 양극화 문제가 대두됨 ○ 해운대구는 국제관광도시로서 발전과정에서 도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남 ○ 해운대구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지역 격차 문제가 나타남
기회_ Opportunity	위협_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구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각종 질병 및

<p>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해운대구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권도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해운대구는 높은 문화수준을 기초로 문화인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음 	<p>사회문화적 규범 혼란, 도시 안전의 문제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구는 사회.경제.문화적 격차로 인한 사회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해운대구는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개발정책으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됨
---	--

3. 인권도시 해운대의 비전과 전략



VI. 해운대구 인권지표 및 지수 개발

1. 인권지표의 개념과 기능

○ 인권지표

- 인권지표는 인권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과 실태를 총체적으로 나타낸 수치나 통계를 의미함
- 인권의 양적·질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특정 사회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됨
- 인권지표는 인권 발전과정 중 어느 한 국면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규범적인 통계나 척도라고 할 수 있음

○ 지수의 개념

- 지수는 지표로 구체화된 사회변동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부여한 수치를 의미함
- 복잡한 사회현상을 수치를 통해 단순화할 목적으로, 관련 지표를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목요연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 인권지수

- 인권지수는 인권을 둘러싼 전반적인 현재 상황을 기준점과 대비하기 위해서 설정한 표준화된 종합수치
- 이는 특정 인권분야 항목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인권의 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음
- 지표를 지수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지표를 선정한 후, 지표별로 가중치를 계산하여 부문지수를 산정하는 1단계와, 부문별 중요도를 계산하고 각 지수를 통합함으로써 종합지수를 산정하는 2단계로 나뉨
- 결론적으로, 인권지수는 인권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그 성과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됨

2. 해운대구 인권지표

- 해운대구 인권지표는 국제적 인권논의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최소한의 논의를 핵심으로 하고, 해운대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근거한 정책지표를 결합하여 해운대구의 고유성을 담은 지역 지표로 구성함

○ 5가지 전략과 관련해서 인권지표를 구성함

5대 인권 영역	지표 세부 방향
1.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주체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중심이 됨 - 소극적인 신체적 자유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자유가 보장되는 도시가 인권도시임 - 여성 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범죄 및 개인정보보호를 지표로 하여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도시를 지향함
2. 인권 친화적인 환경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도시는 기본적으로 안전이 보장되고, 환경이 쾌적한 도시임 -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재난인 교통사고와 화재발생률을 줄임으로서 도시 안전을 확보함 - 환경과 관련된 지표를 구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최대한 누리는 인권도시를 지향함
3. 인권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안전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가 필수적임 - 교육의 권리와 문화를 누릴 권리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함 - 문화향유가 사회계층 간 격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 문화향유와 더불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표로 구성해야함
4.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행복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사회의 수준은 곧 구성원의 복지 수준과 동일하다고 할만큼 복지가 중요한 사회임 - 주민들의 일반적 복지수준, 건강권 등 보편적 인권과 함께 노동,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를 지표로 함 - 도시공동체의 행복은 도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주체들이 최대한 누리는데서 시작하기에, 사회적 약자의 행복이 지표의 우선순위가 됨
5. 소통과 참여가 실현되는 인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연대가 활발한 것이 인권도시의 특성이라 할 수 있음 - 시민단체 활동, 자원봉사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지표로 하여 소통을 기초로 한 인권도시를 지향함

○ 해운대구 5대 영역 인권지표

정책목표	인권내용	세부지표
		정책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도시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성폭력 발생률 · 성폭력 상담률 · 여성,노동,장애인,아동 학대 및 폭력 · 외국인노동자 학대 및 폭력 · 학교폭력 발생 수 · 개인정보보호 · 5대 범죄 발생률 · 아동 유괴 및 실종 발생률
인권친화적 환경도시 (6)	안전할 권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발생률 · 화재 발생률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피해 민원발생수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9)	교육받을 권리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수 · 무상급식 지원율 · 지자체 교육예산 보조율 · 학생1인당 교육예산 증가율 · 평생교육 참여율 · 학생 중도탈락률
	문화를 누릴 권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시설수 · 공공도서관수 ·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참여율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행복도시 (30)	일반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국민연금 가입률 · 고용보험 가입률 · 사회복지예산 비율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수명 · 흡연자율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감염병 발생 수 · 비만인구율 · 자살률 · 5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노동(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증감률 · 산업재해 발생 증감률
	여성(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여성의원 비율 · 아동 보육시설수
	아동 청소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수 · 청소년 활동시설 이용자수
	장애인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및 점자보도블럭 설치율 ·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의무고용 실천율 · 특수학급 설치율 · 1급 중증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시간
	노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 · 노인요양시설 설치율
	다문화(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률 · 북한이탈주민 대상 생활수요조사
소통과 참여가 실현되는 도시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위원회 시민참여율 · 시민단체 증가율 · 자원봉사 참여율 · 취약계층 바우처사업 수혜율 · 인권교육 실시학교 비율 · 공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참여율 · 시민 인권교육 참여율 · 인권교육 전문강사 인력양성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순위 · 인권전담부서 인원수 증가율 · 인권 정책사업 투자예산 증가율 ·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 공공기관 국내외 인권교류협력 실시수

VII. 해운대구 인권지표 및 지수 현황과 계획

1. 해운대구 인권지표 현황

○ 인권 5개 영역에서 총 67개로 구성된 “해운대구 인권지표” 는 크게 ‘정책지표’ 와 ‘현황지표’ 로 분류됨.

○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도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인권도시>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② 개인정보보호	●	●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권도시>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성폭력 발생률	●	●
② 성폭력 상담률		●
③ 여성·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및 폭력		●
④ 외국인노동자 학대 및 폭력		●
⑤ 학교폭력 발생 수		●
⑥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률		●
⑦ 아동 유괴·실종 발생률		●

○ 인권친화적 환경도시

<재난으로부터 도시 주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교통사고 발생률	●	●
② 화재 발생률	●	●
③ 자연재해 피해		●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환경피해 민원발생수		●
②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
③ 공공기관 신축시 인권영향평가 실시	●	●

○ 인권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교육받을 권리>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교원 1인당 / 학급당 학생수		●
②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		●
③ 지방자치단체 교육예산 보조율		●
④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증가율		●
⑤ 평생교육 참여율	●	●
⑥ 학생 중도탈락률	●	●
⑦ 아동 유괴·실종 발생률		●

○ 문화를 누릴 권리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문화체육시설수		●
② 공공도서관수		●
③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참여율	●	●

○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행복도시

<복지 일반 현황>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② 경제활동참가율		●
③ 실업률		●
④ 국민연금 가입률		●
⑤ 고용보험 가입률		●
⑥ 사회복지예산 비율	●	●

<건강할 권리>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평균수명		●
② 흡연자 비율		●
③ 법정 감염병* 발생 수	●	●
④ 비만인구 비율		●
⑤ 자살률		●
⑥ 5대 질환(암·뇌졸중·심장병·당뇨·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789호)

<노동권>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	●	●
②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증감률		●
③ 산업재해 발생 증감률		●

<여성의 권리>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② 여성의원 비율		●
③ 보육시설 수	●	●

<아동·청소년의 권리>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보육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수		●
② 청소년 활동시설 이용자수	●	●

<장애인의 권리>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및 점자보도블럭 설치율	●	●
②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		●
③ 장애인 고용률		●
④ 장애인 의무고용 실천율		●
⑤ 특수학급 설치율		●
⑥ 1급 중증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시간		●

<노인의 권리>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		●
② 노인 요양시설 설치율	●	●

<다문화 권리>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률	●	●
② 북한이탈주민 대상 생활수요조사		●

○ 소통과 참여가 실현되는 도시

<인권을 실현하는 공공기관>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공공기관 위원회의 시민위원 참여율	●	●
② 취약계층 바우처사업 수혜 비율	●	●
③ 공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참여율	●	●
④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순위	●	●
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	●
⑥ 시민단체 증가율		●
⑦ 자원봉사 참여율	●	●

<도시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도시>

세부지표	정책지표	현황지표
① 인권전담부서 인원 증가율	●	●
② 인권교육 실시하는 학교 비율	●	●
③ 인권교육 전문강사 인력 양성	●	●
④ 주민의 인권교육 참여율	●	●
⑤ 인권 정책사업 투자예산 증가율	●	●
⑥ 국내외 인권교류협력 실시 횟수	●	●

2. 부산시 해운대구 인권지표 실천계획

- 인권지표에 따라 단계적 실천 목표와 방안을 제시함
- 예산,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시함
- 각 인권 영역과 관련된 지수와 그 목표, 실천방안을 제시함
- 지수산정방식과 단계별 실천목표의 구성 원리
 - 본 장에서 제시하는 지수산정방식과 단계별 실천목표는 각 지표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운대구의 인권증진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시함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권증진을 추진하는 해운대구청 및 인권전담부서에 대해 해운대구의 현 상황에서 최대 기준치 또는 최소 기준치를 설정하여 단계별 실천목표로 제시함으로써,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도록 함

<예시>

- 지표 중 개인정보보호지수의 경우를 사용하여 단계별 실천목표 구성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지표 목록	2012년	단계별 실천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인정보보호지수	x	a	b	c	d	e
구성원리	기준년도	$x \leq a$	$a \leq b < c$	$b \leq c < d$	$c \leq d < e$	$d \leq e$

- 2012년의 기준년도 지표를 x라 하면, 2013년은 최소한 x와 같거나 x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

- 요약하면, 인권증진을 위한 최소치를 실천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무리하게 실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추진과정에서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정책지표 구성

○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도시

- 개인정보보호지수
- 성폭력 증감률

○ 인권친화적 환경 도시

- 교통사고 발생률
- 화재발생률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인권영향평가

○ 인권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 평생교육 참여율
- 학업중단율
-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참여율

○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행복도시

- 사회복지예산비율
- 법정감염병 발생 수
-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
- 보육시설수
- 청소년 활동시설 이용자수
- 음향신호기 및 점자보도블럭 설치율
- 노인요양시설수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률

○ 소통과 참여가 실현되는 도시

- 공공기관 위원회 시민참여율
- 취약계층 바우처사업 수혜율
- 공공기관 인권교육 참여율
- 공공기관 청렴도
-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 자원봉사 참여율
- 인권담당부서 인원 증감율
- 인권교육 실시 학교 수
- 인권교육 전문강사 증가율
- 주민 인권교육 참여율
- 인권증진 투자예산 증감율
- 교류·협력 실시횟수

VIII. 인권도시 해운대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

1. 인권증진계획 추진체계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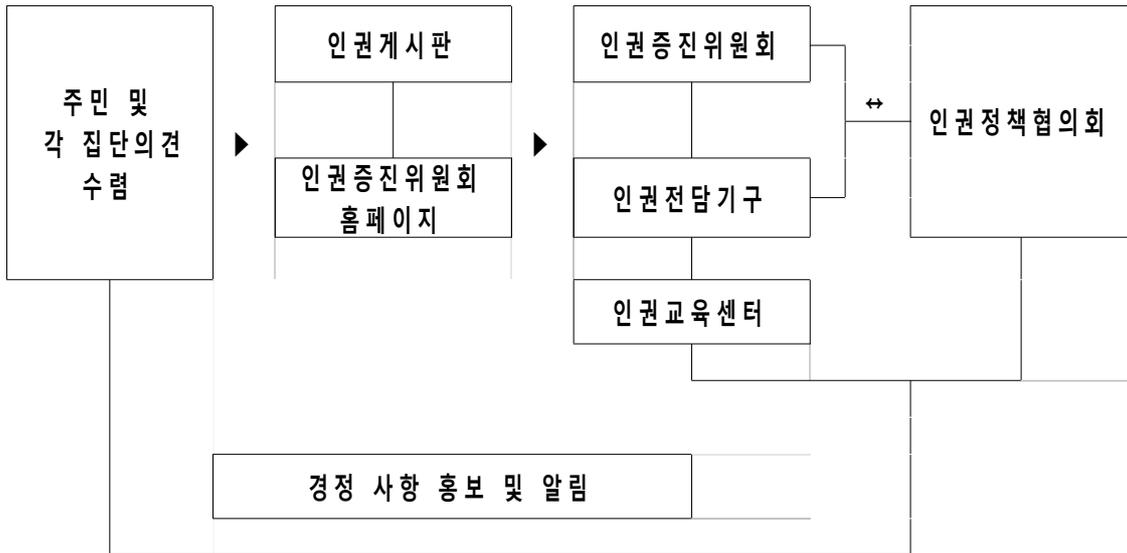
○ 인권증진위원회 역할 강화

○ 인권전담기구 설립

- 설립이 어려울 경우 각 부처에 인권담당직원을 두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음

- 인권교육센터
-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정책협의회
- 온·오프라인 협력적 시스템



2. 분야별 인권도시 세부 실천 방안

-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도시

<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도시’ 실천 과제 >

시행연도	실천 과제
2013	안전한 도시 선언, 해운대구 차원의 인권보장 시스템 제도화 계획 수립, 주민·구청·경찰이 함께 하는 지역적 범죄 예방 환경 조성 및 자살 방지 단계별 계획 수립
2014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인권 게시판 운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 네트워크 구축, 범죄 실태 파악, 자살 실태 조사 및 예방시스템 구축
2015	도시 차원에서 범죄에 취약한 환경 개선, 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독려 및 홍보, 인권 상담 센터
2016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및 활동 방안 수립, 인권보장 출동서비스
2017	인권행정체제 확립, 주민·구청·경찰이 함께 하는 범죄 예방 환경 조성

○ **인권 친화적 환경 도시**

< ‘인권 친화적 환경 도시’ 실천 과제 >

시행 연도	실천 과제
2013	인권친화적인 쾌적한 환경 도시 선언, 인권친화적인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계획 수립
2014	보행자 중심의 도로, 신호 체계 개선과 관련된 실태 조사, 환경오염 및 파괴 방지 실태 조사, 개선된 환경영향평가 실시, 해운대구 건물 환경 실태 조사, 인권영향평가 홍보, 소방청과 재난 관리 네트워크 구축
2015	보행자 중심의 도로, 신호 체계 개선과 관련된 사업계획 실시, 인권영향평가 시범 실시, 인권인증제도 시범실시, 화재, 자연 재해 등 실태 조사
2016	수정된 환경오염 및 파괴 방지 관리 시스템 시행, 환경 친화적인 도시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2017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 인권영향평가 전면 실시, 인권 인증제도 전면 실시

○ **인권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 ‘인권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실천 과제 >

시행 연도	실천 과제
2013	인권문화 도시 선언, 인권 친화적 행정 선언, 인권 도시 시범 지역 선정 및 조성 계획 수립, 인권교육 계획 수립, 인권의 날 제정 계획 수립, 청소년 인권 문화제 계획 수립, 부산 국제 영화제 인권 섹션 마련 협의, 인권공원 조성계획 수립
2014	부산국제 영화제 인권섹션 시행, 공무원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의 날, 청소년 인권 문화제 실시 방안 마련,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 도시 시범 지역 선정, 인권 도시 해운대 상징물 개발
2015	부산국제 영화제 아카이브 조성, 인권 도시 시범 지역 조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보급, 시민인권전문가 양성 방안 마련
2016	부산 국제 영화제 관련 인권 영화 학교 시행, 학생, 시민 대상 인권아카데미 시행, 인권의 날 홍보, 청소년 인권 문화제 홍보
2017	인권 친화적 언어 개발, 인권의 날 실시, 청소년 인권 문화제 실시

○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행복도시**

<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행복도시’ 실천 과제 >

시행연도	실천 과제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금지 선언 ○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장애인 불편 해소 계획 수립 ○ 노인 일자리 개발 계획 수립 ○ 독거노인 돌봄 맞춤형 서비스 개발 계획 수립 ○ 차상위 저소득 노인 지원 계획 수립 ○ 이주민 지원 계획 수립 ○ 인권 피해자 치료 및 재활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및 질병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양보 마크제 시행 계획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불편 실태조사 ○ 독거노인 수요 실태조사 ○ 차상위 저소득 노인 실태조사 ○ 이주민 및 다문화 집단 실태 조사 ○ 양보 마크제 홍보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별 인권 조례 제정(장애인은 이미 제정되어 있음) ○ 구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례 시행 규칙 마련 ○ 양보 마크제 실시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권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및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 인권 피해자 치료 및 재활 시스템 구축

○ **소통과 참여가 실현되는 도시**

< ‘소통과 참여가 실현되는 도시’ 실천 과제 >

시행연도	실천 과제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인권도시 선언 ○ 인권서포터즈 조직 방안 마련 ○ 행정 정보 공개,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위원회 운영 및 해운대구 인권 거버넌스 구축 계획 수립 ○ 시민사회·국내·국외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계획 수립 ○ 인권 증진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서포터즈 조직 ○ 인권증진위원회 홈페이지 시행 ○ 시민참여 인권정책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와 인권침해 상담 협력체계 구축 ○ 해운대구 내의 인권 거버넌스 구축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인권 네트워크 구축 ○ 국내 인권 포럼 개최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인권 네트워크 구축 ○ 국제 인권 포럼 개최 ○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 및 시행규칙 마련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해운대구 인권 현장 제정

3. 인권도시 홍보 및 관광개발에 대한 연구

- 인권 일류도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제작
- 부산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 활용
- ‘인권의 날’을 인권축제 기간으로 활용
- 인권도시 시범지구 등 활용
-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권 포럼 및 학술 대회 등을 유치
- 매스 미디어 등을 활용한 인권도시로서의 해운대를 홍보
- 인권 인증제, 양보 마크제 등의 확산

4.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제 4 조
 - 제 4 조 규정은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차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권 차원에서 구체적 내용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 및 인권도시 취지를 감안한 구민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과 아울러 이런 기본적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제 8 조, 제 9 조, 제10조
 - 부산인권증진위원회의 역할이 자문 및 심의기구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

음

- 인권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증진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기구와 같은 소극적 역할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권의 증진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현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 중의 하나임. 인권 문제는 오히려 구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할 경우 업무의 과부화 사태에 빠질 우려가 있음. 이런 인권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구청입장에서는 업무적인 측면, 정책 산출 측면, 정책 집행 측면에서 과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발생함
- 이런 측면에서 인권증진위원회는 갈등을 조정하여 인권지표를 포함한 인권관련의제를 개발 및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인권증진위원회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감안하여 의회, 구청,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권증진계획에 따라 인권증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 있음. 현재 분과위원회의 내용이 피상적인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음

○ 각종 선언 및 조례 시행 규칙 마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는 앞으로 해운대구 인권 헌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따라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선언 및 조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함(개정됨)
- 인권 증진 조례에는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없음
- 현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유 보장에 대한 선언이나 노인 차별, 여성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조례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다양한 영역의 인권 증진과 관련된 해운대구 차원의 선언 등이 필요함. 예컨대 아동·청소년의 학대 방지 선언,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선언 등임. 이런 선언들은 해운대구가 선도적인 인권도시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각종 선언들을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인권 도시 실현을 위한 각종 선언 및 조례 제·개정
 - 도시권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시
 - 해운대 차원에서 영역별로 인권과 관련된 선언을 하고, 각 선언에 맞는 조례 제정 및 정책 로드맵을 제시함

인권제도화와 지방의원의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 유형

인권규범

-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인권을 법적인 규범으로 만드는 것
- ▶ 인권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제별 또는 영역별 조례와 포괄적인 인권 기본조례로 제정
- ▶ 조례 제정 이후 인권의 내용을 다루는 인권헌장이나 인권선언을 채택하기도 함

- (1) 인권조례
- (2) 인권헌장
- (3) 인권(도시) 선언
- (4) 인권행정강령

인권규범

-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인권을 법적인 규범으로 만드는 것
- ▶ 인권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제별 또는 영역별 조례와 포괄적인 인권 기본조례로 제정
- ▶ 조례 제정 이후 인권의 내용을 다루는 인권헌장이나 인권선언을 채택하기도 함

- (1) 인권조례
- (2) 인권헌장
- (3) 인권(도시) 선언
- (4) 인권행정강령

인권제도

- ▶ 인권제도는 조례에 따라 인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도. 대표적인 예로 인권담당관실과 인권위원회가 있음
- ▶ 전자가 행정부에 속한다면 후자는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는 제도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인권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의 대표로 구성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독립적으로 개별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인권보호관 등 음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기도 함

- (1) 인권전담부서
- (2) 인권위원회
- (3) 인권구제기구
- (4) 인권센터

인권정책

- ▶ 인권정책은 설립된 제도를 통해 인권도시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구체적인 인권행정과 사업임
- ▶ 대표적인 예로 인권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 정책이 있음.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사업을 해석하고 통합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임
- ▶ 이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규 예산을 배정하여 다양한 인권 관련 사업을 시행

- (1) 인권기본계획
- (2) 인권지표
- (3) 인권영향평가
- (4) 공무원 인권교육

인권문화

- ▶ 인권문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인권정책과 사업이 시민 사회의 인권운동 및 주민운동과 결합하여 인권친화적 관행과 문화가 자리잡는 단계
- ▶ 즉 인권 규범을 내재화 또는 일상화하는 단계
- ▶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 인권교육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인권 문화를 확산하고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이 이뤄짐

인권도시의 발전 단계

(2014 한국인권도시백서, 한국인권재단)

단계	주요 내용과 사례
인권운동	시민사회의 인권운동과 풀뿌리 주민운동
인권규범	인권조례(개별 및 기본조례), 인권선언, 인권헌장 등
인권제도	인권담당관실,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또는 옴부즈맨, 인권센터 등
인권정책	인권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공무원 인권교육, 인권마을 만들기 등
인권문화	시민 인권교육 등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	제정일	조례명	담당부서
광역시자치단체(14개)				
1	서울특별시	'12.9.28	인권기본조례	인권담당관
2	부산광역시	'12.2.22 (18.7.10개정)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3	대구광역시	'09.11.18 (12.1.1, '18.4.1개정)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권담당관
4	울산광역시	'12.10.1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5	대전광역시	'12.11.2 (18.7.10개정)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자치행정과
6	충청남도	'12.6.10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7	전라북도	'10.7.9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행정지원관
8	전라남도	'12.7.5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행정과
9	경상남도	'10.8.26	인권 증진 조례	법무담당관
10	강원도	'18.8.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11	경기도	'18.8.6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12	충청북도	'18.12.2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13	경상북도	'18.11.1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14	대구광역시	'14.6.20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법무담당관

- 제주도는 도 의회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지만 도 행정부의 재의요구로 실행이 지연된 상태

- 기초자치단체는 부산시 해운대구가 2001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한 이후 가장 최근 서울시 구로구까지 현재 전체 227개 중 5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인권기본조례 제정.

인권증진위원회 및 인권전담기구 구성 지자체 현황

- ◆ * 2013년 7월 이후 인권기구를 최초로 지정 자치단체
- ◆ - 인권증진위원회 없이 담당자 1인만 지정되어 있는 자치단체
- ◆ 모든 지정된 전담부서 있는 자치단체: 서울관구(정북기관담당 내 인권팀 2인), 광주특구(인권정책추진팀 2명, 2인)

이행기관			
인권증진 시민 위원회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 대전시, 충남도, 성북구, 해운대구, 부산북구, 광주남구, *광주특구, *광주광산구, 울산북구, 울산동구, 광명시	16	
	유관협약체 (8회 이상)	서울시, 광주시, 충남도, 성북구, 해운대구, 울산북구, 울산동구, 광명시	8
인권전담 기구	인권전담부서	서울시, 광주시, 성북구, 영종도, 광주동구, 수원시	8 (8)
	유관조직 담당자 지정	부산시, 대전시,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강원도, 충청도, 해운대구, 수원시, 부산북구, 부산중구, 대구중구, 광주남구, 광주서구, 광주광산구, 울산북구, 울산동구, 울산남구, 대전서구,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 부여군, 서산시, 목포시, 고령군, 고성군, 황양군, 진주시, 문경시, 고령군, 진주시	82 (21)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

- ▶ 위의 표에서 인권증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인권조례가 제정된 39개의 기초지자체에서 9개에 불과
- ▶ 그리고 3회 이상 위원회가 운영된 곳도 5개 뿐임
- ▶ 대다수는 형식적으로 담당자 1인만 지정되어 있음
- ▶ 성북구나 울산동구, 울산북구, 해운대구처럼 지자체의 장이나 조례발의 의원이 인권조례에 대한 실질적 이행의지가 있는 곳을 제외한다면, 대다수 기초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고도 제대로 된 실천이 미비한 것이 현실
- ▶ 연간 인권예산의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다면 101억에서부터 116만원까지 천차만별.(세계일보 2013.5.8)

인권헌장 및 인권도시선언

<인권헌장>

- 국제 최초 도시에 대한 인권헌장: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 2006년 1월 1일 공표
- 광주광역시 '광주인권헌장' 2012년 5월 21일 공표
- 서울시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 계획
- 서울시 성북구 '성북 주민인권선언' 2013년 12월 제정

<인권도시>

- 인권도시 선언 발표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울산시 동구, 경상남도 진주시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의 정의>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는 정부나, 조직, 기업들이 좀 더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들의 계획들과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가 약속한 인권과, 각 개인이나 집단, 공동체가 실제 현실에서 향유할 수 있는 인권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강현수, 2013:4-5). 이처럼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어떤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었을 때 시민들의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여 기술하기 때문에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안 권고안대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을 조례개정 시에 추가하는 것을 통해,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인권영향평가가 행정 전반에 입안되도록 보다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음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제30조(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시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인권영향평가에 대하여 조례에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음

•기초지자체에서 인권영향평가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볼 수 있는 성북구는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인권전담부서를 통하여 실질적인 인권영향평가 업무를 수행

•사례로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소별 인권영향평가 실시, 정릉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세출예산 단위사업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 장남감 도서관 인권영향평가 실시, 조례 제·개정안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이 있음

•인권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성북구처럼 ‘주민생활과 직결된 구정사업 시행 전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라는 모델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성북구 인권영향 평가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

2012. 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소별 인권영향평가 실시

선거 전날인 2012년 4월 10일 성북구 관내 98개 전 투표소를 대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직원 전원이 현장에 투입, 투표소인권영향 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전수조사 실시

인권영향평가와 조치사항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 턱, 비좁은 통로로 인해 접근권과 이동권을 제한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장소를 몇 군데 지적, 간이투표소, 간이경사로 설치 등의 보안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

대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관내 98개 투표소 전수 조사(감사과, 등 합동)

출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결과 지적된 13개 투표소중 7개 투표소는 투표소를 변경하였고, 나머지는 간이경사로 및 이동투표소 설치하여 접근권 확보

정릉천 산책로 조성사업 인권영향평가

북한산 국립공원 - 정릉시장간, 약 1.6km구간의 정릉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인권영향을 평가

- 안전성, 친환경성, 주민참여 보장 등 인권친화적 요소 반영여부등 평가함
- 장애인, 노인, 아동,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준수 등 "접근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계획 등 평가

평가방법

- 설계도면 평가 및 정릉천 산책로 조성사업 인권영향 점검표에 의한 현장실사
- 자가진단 평가 - 인권영향평가위원회(의) 주민(4), 인권영향평가위원의 9명은 감사담당관, 치수방재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및 인민위원으로 구성정릉천 산책로 인권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및 현장 점검(12.7.30)
- 성북구청(감사과, 치수방재과) 및 장애인 단체 정릉가, 주민대표 등 13명으로 구성

대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 관내 98개 투표소 전수 조사(감사과, 등 합동)
- 출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결과 지적된 13개 투표소중 7개 투표소는 투표소를 변경하였고, 나머지는 간이경사로 및 이동투표소 설치하여 접근권 확보

설계도면 검토 등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

- 위험지역 난간높이 기준미달(H 10M → H 12M)
- 폭우시 대피기준 미흡 (60대여성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 치안방범 등 안전대책 미흡(비상벨 설치, CCTV 및 가로등 전자재촉소 설치)
- 장애인 이용 불편(안내판 및 표지표 설치)
- 산책로 주변 주민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 미흡 (주민설명회 개최)
- 횡단보도 승강기사거리 장애인 이용 불편(횡단보도 경계선 제거)

2013년 세출예산 단위사업 인권영향평가

2013 세출예산 단위 사업 총 243개 중에서 내년 인권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전면 실시에 앞서 개선할 점 및 운영방향 등의 검토를 위해 1개부서 1단위사업(36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평가방법

- 단위사업에 대한 개요 작성 및 체크리스트(7개 항목)에 대한 사업 담당자의 자가진단 실시

평가항목

- 권리제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 등 침해요소가 있는지 여부
- 부정적, 차별적 용어 사용 여부
- 정보의 접근성, 주민의 알 권리 충족, 주민참여 보장 여부
- 권리 침해시 구제수단 및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지 여부

추진경과



주요결과

- 부정적(차별적) 용어 사용에 대해서 17개 부서에 감사담당관(인권팀)에서 재검토 요청
- 주민의 알 권리, 정보 접근권, 주민참여 등에 대해서는 인권친화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2. 9. 17 ~ 12. 16
- 수행기관 : (사)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인권재단
- 주요과업내용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대상정책 범위, 인권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 개발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 시범 실시(기본설계에 인권 기본개념 반영,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시 인권관련 항목 평가)

- 추진경과

용역착수 보고회 : 2012. 09. 24(월) 10:00, 구청 3층 성북배움터

건축 설계지침 관련 간담회 : 2012. 10. 15(월) 10:00, 청 8층 감사담당관 사무실 내

용역 중간보고회 : 2012. 11. 30(금) 10:00, 구청 3층 성북배움터

안암동 복합청사 기본설계안 관련 간담회 : 2012. 12. 14(금) 10:00, 구청 3층 성북배움터

용역 최종 보고회 : 2013. 01. 04(금) 10:00, 구청 6층 미래기획실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과정

- 2012. 9.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의뢰(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인권재단)
- 2012. 10. 인권개념을 담은 설계지침 제안
- 2012. 11. 안암동 복합청사 설계경기 공모
- 2012. 11. 인권전문가 설계심사 참여(인권합류 평가)
- 2012. 12. 설계당선자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 2013. 1~2. 설계당선자에 대한 1, 2차 주민설명회 개최

주요결과

- 지하주차장 계획, 지하1층을 보행자 및 장애인 예비공간 확보 필요
- 1층 전면계단의 타당성 검토
- 1층 주민카페를 주민커뮤니티 명칭 변경, 인권수요 및 주민자치 확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유연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1층에 이동약자를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 및 무인발급기 설치
- 2층에 인권을 고려한 민원실 및 인권취약층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상담실 설계하고 직원 및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존중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
- 방초 2층에 배치하였던 헬스장을 4층으로 조정 등 층별 용도 변경
- 인권약자를 위한 실내건축 및 집기 구매
- 인권친화적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인권기본계획

- ▶ 인권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핵심은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편적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주민과 시민사회, 의제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 이를 위해서 지역 구성원 기본현황(예: 주민 대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인구·노령인구·아동인구·여성·한부모 세대·이주민·탈북자 인구 등에 대한 파악)과 지역 구성원 직업현황, 지역 내 빈곤격차 등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주거형태와 환경 등에 대한 조사,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기본계획은 수립되어야 함

인권기본계획

인권기본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수립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1. 절차의 민주성, 공개성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인권 및 사회복지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2. 지역에 특수성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기본계획이 작성되어야 하지만 보편적 인권에 대한 내용이 선행되어야 함

3. 실천가능성

년도별로 실질적으로 실천가능한 사업들이 제시되어야 함

4. 가이드라인 제시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업들에 있어서 인권지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인권교육과 인권교육 실시 현황

- 인권조례에 있어서 인권교육 조항은 지자체에서 인권 문화와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주요한 실천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조례안 제개정 권고안에 나오기 전에 해운대구의 조례에서는 보칙으로 "제 20조(인권증진 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 조항에서 인권교육이 생략된 곳도 많은 것이 현실
-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조례에서 생략된 지자체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반드시 명문화시켜야 함

인권교육과 인권교육 실시 현황

<인권교육 미시실 기초자치단체>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초구, 부산 수영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중구, 울산 남구, 대전 대덕구, 경기
화성시, 경기 김포시,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충남
부여군, 충남 천안시, 충남 서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완주군, 전남 고흥군, 전남 보성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함
양군, 경남 문경시, 경북 고령군, 강원 원주시

- ▶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권조례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권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몇 군데에 불과
- ▶ 특히 조례제정이 1년 이상이 된 지자체에서 조례에서 명시된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임무의 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음
- ▶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울산 동구의 경우에는 인권교육이 모범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타 기초지자체에서는 위 지자체들을 모델로 삼아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이행해야 될 것임
- ▶ 인권조례에 있어서 인권교육이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문화 확산이라는 원론적 이유에서 출발.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와 인권차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범죄예방에 있어서도 인권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 하지만, 인권행정의 이행주체인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인권감수성을 가지지 못하면서 지자체에서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음
- ▶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인권교육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함

인권제도화와 지방의원의 역할

- ▶ 행정과 시민사회간의 거버넌스에 대한 매개와 비판 수행
- ▶ 구체적인 생활세계(마을, 기업,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제화
- ▶ 도시계획과 환경권 분야에 있어서 인권의제 도입 필요
- ▶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권인지 예산편성 도입
- ▶ 저소득 빈곤층, 독거노인, 비정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이주민, 성소수자, 성매매여성, 노숙자, 탈북자, 부랑자, 정신보건 장애인 등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를 인권의제화해야 함

인권제도화와 지방의원의 역할

- ▶ 인권제도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때로는 제도화가 인권정치의 제약이 될 수도 있음
- ▶ 인권 제도화/성문화에 따른 효과는 지방자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역동적 인권운동에 제약이 될 수도 있음
- ▶ 인권제도화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지자체에서도 지방의원이 수행하는 정치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함
- ▶ 훌륭한 인권제도화가 있더라도 의회나 행정부가 인권지향적 마인드가 없을 때 그 제도는 무력화 될 수 있음
- ▶ 지역의 시민사회와 소통과 유기적 연대 없이 위로부터 구성된 제도는 인권제도화의 목적과는 다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반드시 인권감수성이 누구보다 앞서야 하며, 인권제도화에 대한 책임감(accountability)과 이해도가 높아야 함

인권제도화와 지방의원의 역할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 ▶ 지방의원의 민원 해결에 있어서 사익추구를 위한 단순한 권익 해결문제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 인권은 갈등을 합의로 조정하는 쟁점사항이 아니므로 민원에 따른 권익문제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함
- ▶ 보편적 인권의제가 진보/보수의 정치적 구도나 파당적 갈등쟁점이 되어서는 안됨

인권으로 생각하고 고민할거리

- ▶ 폐지를 집에 쌓아두는 독거노인
- ▶ 정신분열증 / 조현병?
- ▶ 발달장애 성인들의 방치
- ▶ 고아원에 살고 있는 무국적 아동
- ▶ 사회복지사의 죽음
- ▶ 왕따로 자살한 성소수자 청소년
- ▶ 사회적가치 기본법
- ▶ 특별한 한 사람, 당신은 원하지 않나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호딩병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의 방



노원구, '호딩 장애' 돕기로... 청소해주고 심리 치료 연계

17평 집에 쌓인 쓰레기더미 치우니 2.5t트럭 3대반 분량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노원구청 직원이 집 안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채승우 기자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안쪽에 2m 높이로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가 브래싱 루너지뿔 위로로 밖으로 쏟아졌다. 말 그대로 '쓰레기 집'이었다.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56㎡(17평)짜리 아파트. 동명·소주명, 못 쓰는 그릇, 플라스틱 바구니 등 온갖 생활 쓰레기가 화장실까지 쌓여 있었다. 화장실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 집 안구석에 놓아둔 상자에다가 용변을 해결해 귀찮아 하위가 풀렸다. 집주인 이모(50)씨와 그의 아들 정모(27·지정장애 3급)씨는 집이 있어서 잠잘 곳이 없어 3주 전부터 아파트 밖 나무 밑에 동자리를 펴고 잤다.

이날 이씨 집에 출동한 사회복지사와 청소 업체 직원은 20여명은 오전에 집 내부 쓰레기를 전부 뒤어내고, 오후 내내 소독을 했다. 이씨 집에서만 2.5t 트럭 3대 반 분량의 쓰레기가 나왔다.

이씨같이 각종 잡동사리를 굶어보오는 극단적 수집광을 위해 노원구가 청소·소독 등 복지 서비스에 나섰다. 이씨 같은 주민들이 '호딩 장애(hoarding disorder)'로 알려진 정신장애를 앓는 것으로 보고 보훈의 승인을 내민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집을 보여주고 치료로 연계해주는 '호더스(hoarders)'라는 TV 프로그램이 제작될 만큼 관심이 높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자체가 이런 집을 찾아 청소해주고 심리 치료까지 연계해주는 것은 서울 노원구청이 처음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쓰레기를 쌓아 두면 이웃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노원구에만 이런 집이 16가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말했다. 노원구청은 이번 달 12일까지 16가구를 10가구는 청소를 마쳤고, 나머지 6가구는 청소를 하기 위해 가구주와 상의하고 있다.

[인권 잃은 시민, 성인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하는 순간 갈 곳 없어 '방치' <부산일보 2014-9-22>

지능이 낮아 일상 생활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이 학업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이 고졸학교 과정을 졸업 이후 사실상 사회유지망의 표적에서 벗어나 방치되면서 심리적이나 경제적 좌절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산지역에는 지적장애인 1만여 명, 자폐성 장애인 1천300여 명 등 모두 1만 1천3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들 중 60%가량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다.

부산에서는 매년 고교 과정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니는 1천 명에 가까운 발달장애인이 졸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졸업 이후 취업 등 위해 사정표 진찰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최근 본보 취재팀이 부산유지개발원과 함께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188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발달장애인이 직장 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건(7.1%)에 불과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단 한명이라도 직업을 가진 기업이 있는 경우도 22건(2%)에 그쳤고, 이중 절반 이상은 근무시간이 6개월을 넘지 못했다.

학교를 졸업한 대다수 성인 발달장애인이 사회 진출에 실패하고 있으나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복지기관은 매우 적고 비용 부담이 크다.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남구 대연5동 나사발발달장애인복지관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더욱이 이곳 취업은 30여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거의 포항삼태라 1년에 2-3명만 신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부산의 각종 장애인사회복지관 22곳, 장애인유지관 12곳, 주간보호센터 52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6곳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지만, 이 역시 프로그램당 정원이 10여 명 안팎으로 한정된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선호하는 장애인사회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는 대기자를 줄 수 없기 위해 기존 발달장애인의 이용기한을 8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성인 발달장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를 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골칫한 구조다.

이 같은 사정표를 취업용 중하고 복지기관 도움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성인 발달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복지 사각에 내몰려 각종 사 고나 인권침해를 당하기 일쑤다. 실제 지난해 부산장애인성취적합성사업에는 기업의 성인 발달장애인 채용을 위해 인구가 집중되고 '신한 영점노예' 같은 극단적인 경제적 착취 사례도 심각하게 다뤄졌다.

신라대 동성화(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은 졸업 후 성인이 되는 순간 갑자기 팔꿈치가 없어진다"면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 녀를 돌볼 여력이 없는 가정은 자녀를 방치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진욱·송지연·박진숙·장영진 기자

문재인,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대통령직속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기사등록 2014-06-17 14:15:22 [로그인](#)

【서울=뉴시스】주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7일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데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 사업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평가에도 사회적 가치의 실현 여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사회의 가치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의 가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사회 책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해 전문가와 수차례 정책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제도 도입'을 중점적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오후에는 사회적 기업인 리드릭(RIDRIK)을 방문해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했다.

생활동반자등록법 입법 '드라이브'...

<여성신문 2013.6.12 일부발췌>

진선미 의원, "가족은 변한다... 생활동반자 법적 권한 보장해야"

"비혈연 가족 보는 추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버려야
윤원 메시지 많이 받아... 가족 외연 넓히는 데 기여할 것"

"남편과 아내, 딸과 아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지만 이미 현실은 다르잖아요. '제도의 지체'인 셈이죠. 지

체 노인들이 자신들에게 버림받아 자매끼리 사는 경우도 많고, 장애인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비혼이나 이혼 여성들도 다양한 형태로 공동체를 꾸리고 있어요.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법원은 인정되고 의식이 맞는 이들과의 결성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등장 영역에 가거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이들은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연봉 같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나타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찾을 길이 없어 아예 결정을 못 하는 일이 생기지요. 생활공동체를 꾸려 재산을 받았어도 여기저기 많은 사람 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생활동반자등록법은 상속권 인정, 상속 순위, 자녀 입양과 친권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속도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입법을 준비할 생각이다. 여론 조성이 우선 과제여서다. 진 의원은 "효주제 폐지를 당시 효주제를 없애면 가족이 붕괴된다는 일각의 불안이 가장 안타까웠다. 생활동반자등록법은 결혼제도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가족의 외연을 넓히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비혈연 가족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공동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를 제도와할 구상이다.

그는 "입법 소식이 전해진 후 '꼭 만들어달라'는 윤원 메시지 많이 받았다"며 "할아버지 한 아버지가 '내 딸이 불하게 여긴다며 나를 지지한다더라. 예전엔 윤원신규 안 했다면 가족을 무시하는 의원 아니냐며 비난할 텐데 국민의 의식은 분명 진전된 상태'라며 웃었다.

The End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정책 및 조례의 특징에 관하여

신 수 정

광주광역시 북구 의원

I. 들어가며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는 지난 2013년 7월 15일 인권정책추진단이 출범하였고, 의원발의로 같은 해 12월 24일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력하여 인권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제시되면서 지난해는 유독 인권조례가 지자체마다 관심을 갖고 앞 다투어 제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보통 조례가 제정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고민하고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천편 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북구의 인권조례에서는 북구만의 특징을 찾아 조례에 담아보려는 노력들이 조문 하나하나에 배어있는걸 엿볼 수 있다.

북구는 광주학생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근원지이며 전남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꽤 깊은 지역이다. 그래서 북구의 인권조례는 타지역의 인권조례보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더 많은 고민들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북구의 인권정책과 방향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점검하고 또 검토해야만 한다. 실현가능한 제대로 된 조례제정을 만들기 위해 우선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동분야 등 시민활동가들과 교수님, 관계 공무원들 등 3차례의 정식 간담회와 여러차례의 비공식적 방문을 통해 북구의 인권조례의 담아야할 현장의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나갔다.

인권정책추진단에서도 북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북구인권정책과 조례제정을 위한 T/F팀을 결성하여 4차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방향들을 잡아가고 있었다. 조례초안이 만들어지고 이제 최종 주민들 의견을 물어 조례에 반영할 수 있게 “주민참여형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정책 주민 공청회”가 2013. 11. 12일 열렸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한 북구의 인권조례는 6개월에 걸쳐 다듬고 또 다듬어 지난 2013년 12월 24일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II . 북구의 인권조례의 특징

조례를 들여다보면 타 지역의 조례와 다른 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밌고 조문 한줄 한줄에 숨은 속뜻이 깃들여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징적으로 **전문(前文)**, **구민의 권리/구민의 참여**, **명예인권요원 운영**,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등이 있다.

대표적 특징 3가지만 소개하자면

1. 前文(전문)이 있다.

<전 문>

우리 북구민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 운동의 근원지 주민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은 개인은 물론 국가로부터도 결코 침해당하거나 억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 삶을 통해 주장해 왔다.

전문에는 제정과정이나 목적, 기본원칙들을 선언하는 것이며 당연히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조례 2조(목적)과 3조(정의)에서는 前文에 나와 있는 정신들이 기본이 되어 조문화 하였다. 타조례와 달리 그 무엇보다 존엄한 인권에 관련된 조례이기에 前文을 두어 광주정신을 복구인권조례에 담아 다시한번 강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령의 전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의 前文이다.)

2. 제 1조(구민의 권리)가 목적을 앞섰고, 제 5조(구민의 참여)는 구청장의 책무보다 앞섰다.

조례에는 기본 틀거지가 있다.

보통은 1.(목적), 2.(정의), 3.(구청장의 책무)…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져 있다.

앞서 말했듯이 존엄한 인권에 관한 조례이기에 기본틀을 깨고, (구민의 권리)를 (목적)에 앞서 제 1조로 배치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제 5조에 있는 (구민의 참여) 역시, 6조(구청장의 책무)보다 앞에 배치하였다. 지자체의 행사나 행정 홈페이지, 의전 등등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든지 단체장 위주로 진행이 되어진다.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조례들을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단체장의 책임이 막중함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의 주체인 구민의 삶의 질과 인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게 단체장이며 구민들이 있기에 단체장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구인권조례에서는 구민을 단체장 보다 먼저 거론될 수 있게 해두었다.

3. 제 9조(명예인권요원)이 있다.

복구인권조례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바로 명예인권요원이 있다는 것이다. 광주가 인권도시이며 민주 행쟁지의 발원지가 복구임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타구보다 인권의 상징성과 특징이 있어야할 곳이 바로 복구인 것이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명예인권요원을 두는 것이었다. 생각 같아서는 복구 주민모두가 명예인권요원 이었으면 했다.

지난 9월 19일(금) 107명의 명예인권요원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당초 계획에 비해 적은숫자로 시작한 위촉식이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듯이 제 1기, 2기, 3기 등 지속적으로 명예인권요원들이 배출되어서 인권에 자양분이 되고 뿌리가 튼튼히 내려, 복구가 전국에서 가장 구민들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구가 되리라 기대를 해본다.

명예인권요원은 상징적 의미이다.

명예인권요원은 인권촉진자로서 역할과 복구인권정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인권교육도 받아야한다. 무엇보다도 무보수 명예직이다. 실질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인 인권요원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건 미안한 일이다. 하지만 꼭 어떤 계량화 된 실적을 내놓는 것이 아닌 명예인권요원이 사업장마다 상주해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랑비에 서서히 옷이 젖듯 복구는 서서히 인권복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

나비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명예인권요원들의 표식이 있고, 인권요원들 스스로의 자긍심을 비롯해서 인권표식을 의식해서라도 말과 행동이 교정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에서부터 인권교육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바람으로 제 9조에(명예인권요원 운영)을 집어넣었다. 전국 최초 시행하는 것이라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도 본다. 인권과 관련해서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음을 알기게 조바심을 내지 않고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구석구석 잘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와 시민단체, 무엇보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Ⅲ. 마무리

지난해 7월 인권추진단이 출범하면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교육과 인권활동가 역량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인권친화적 업무 시스템 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계시판에 「인권 사랑방」도 개설되어있다. 지속적으로 분야별 인권네트워크 간담회도 수시로 열어 의견들을 듣고 또 듣는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마을 주민이 주최한 일곡동 주민인권학교에도 빠지지 않고 배우는 자세로 참여했다. 이처럼 행정

에서도 모르면 배워야하고 지원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용해야한다.

이제 2015년에는 복구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진다. 첫 단추가 잘 꿰어졌으니 기본계획 역시 복구에 맞게 잘 수립되어지리라 본다. 의회에서는 조례만 근사하게 만들어 놓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본인도 많이 경험해보아서 찢리는 구석이 있지만 정성껏 심혈을 기울려 만든 조례가 자칫 시간이 지나면 책장 속에서만 꽃혀있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일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게 된다.

조례는 제정하기도 어렵지만 제정된 이후에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는지 살펴보는 그때부터서가 조례로서 진가가 발휘되고 의미도 있는 것이다. 「광주 복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그 어떤 타 자치구에 있는 조례보다 특징을 잘 살려 만든 조례라고 자부한다. 잘 만들어졌다고 자부하는 만큼 제대로 실행되어질 수 있게 점검 하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의회와 의원의 역할일 것이다. 오늘도 ‘최고의 인권친화적인 광주복구를 꿈꾸며……’ 이상 마치고자 한다.

<별첨>

광주광역시 복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2.24 조례 제1089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 제20조 등

<전 문>

우리 복구민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 운동의 근원지 주민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은 개인은 물론 국가로부터도 결코 침해당하거나 억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 삶을 통해 주장해 왔다.

우리 복구민은 복구만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긍심으로 민주주의와 정의실현,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웃,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각각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인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보장되는 인권도시 광주 복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복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② 모든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언어,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

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생활 속에서 인권을 실천하는 등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권전담부서와 인권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침해 현장방문 및 상담조사 등 구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4.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5.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6. 명예인권요원 운영방안
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개최)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추진계획, 인권지표(수)의 개발 및 시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지표(수),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명예인권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구의 각 부서와 구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소속 구성원 중 1명을 명예인권요원으로 임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명예인권요원은 구의 각 부서와 구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시설, 기관, 단체 및 사업장의 인권촉진자로서 근무현장의 인권확장 및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며, 복구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각 부서와 구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법인, 시설, 기관, 단체 및 사업장의 인권현황 파악 및 복구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명예인권요원과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명예인권요원은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명예직으로 한다.

⑤ 명예인권요원은 소속 부서와 시설, 기관, 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는 표식을 근무지 책상 위에 부착할 수 있다.

⑥ 명예인권요원은 인권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구청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등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세계인권의 날 기념행사 시 인권증진 및 보장관련 우수구민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시설 및 기관·단체에서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위탁 취소, 보조금 차등 지원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복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주광역시 복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 정책 등이 국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2. 구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3.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서를 구의회 및 제1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복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구청장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복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 외에 국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
2. 인권에 관한 경험 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북구 주민으로서 위원회의 구성관련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제16조(위원회의 독립성과 임기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위촉을 해제할 수 없다.

1. 위원이 장기치료 등 건강상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계되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관련 부서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0조(위원회 권고의 이행 등) ①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3.12.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시기) 이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광주가 주목해야 할 인권 의제

김기곤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 인권의 실천적 이해

인권은 단순히 인간에게 있다고 추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인간이 더욱 잘 살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권리이다. 인권은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삶의 권리를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인권은 민주주의와 평화 등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정의되는 어떤 상태이기도 하지만, 꿈꾸며 이루어 가야 할 실천과제이다.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항목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인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 정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Ife, 2005: 146). 인권이 특정한 가치로서 더 강렬한 의미를 가질 때는 선언적인 명제보다는 현실의 실천 속에 놓여 있을 때이다.

II. 최근의 인권 동향

1. 사회권과 연대권이 강조되고 있다.

인권의 개념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 환경과 삶의 상태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어 왔다. 역사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의 욕구와 이성의 발전 정도는 인권을 내용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있다.

최근 ‘삶의 질(well-being)’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면서 그와 연관된 다양한 사안들이 인권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 인권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의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 잘 지켜지고, 인권의 항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는 ‘좋은 도시’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인권은 사회권과 연대권 등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환경권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권은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는 인권영역이며, 연대권은 사람들 사이의 협력적 실천과 좋은 관계를 지향하는 인권영역이다. 사회권과 연대권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공존을 가져다주는 인권영역이기 때문에 인권도시가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발전해 갈 수 있게 한다.

2. 인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인권을 인간의 총체적 삶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권은 국가의 폭력에 의한 시민권의 침해나 생존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었다. 반면, 현대의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충족을 전제로 하면서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에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삶의 질’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면서 인권의 관점도 넓고 높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권이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최대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김왕배·김종우, 2012). 인권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권리보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인권이 ‘탄압 패러다임에서 웰빙 패러다임’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효제, 2007).

오늘날 인권의 목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의제 설정영역에서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라’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은 점점 더 민주주의 사상 자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조효제, 2008: 27). 또한 인권은 개별적 인간의 존재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인간과 인간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예전에는 인

권을 규정된 인권항목을 중심으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인식하고 실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인권을 도덕 및 윤리라는 잣대로 보려는 노력이 강해지면서, 점차 인권을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집단적 실천과 의무로 이해해 가고 있다.

사람과 사람들 간의 공감을 통한 호혜적인 존중이 중시되고, 좋은 관계 맺기가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조건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인권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연대권 등과 같이 집단의 협력적 실천이 필요한 권리가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인권의 인식지형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권리를 넘어선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인권이 지향하는 또 다른 목적이라는 점에서 인권은 공동체적 지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은 ‘공평하고 좋은 세상의 상징적 등가물’로 이해되기도 한다(조효제, 2008: 27).

Ⅲ. 광주에서 인권도시가 갖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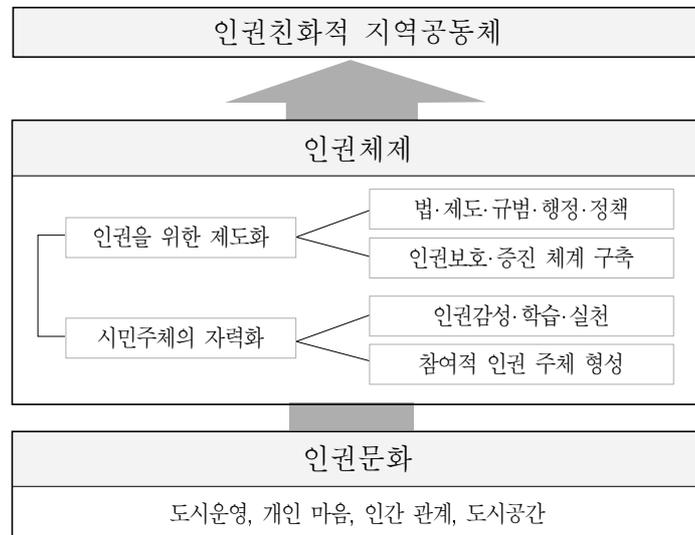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다각적인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권의 보장 단위와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는 의무 주체는 일반적으로 국가이지만, 주거권·보행권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권리는 국가보다는 주민과 더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 의해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인권 및 권리 증진에 보다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인권증진을 책임지려는 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도시가 지역단위의 대안적 도시발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쉽게 말해, 인권도시는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개념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권도시는 인권이 도시운영의 주요 가치로 설정되어 각종 인권제도가 활발히 작동하고, 도시의 고유 자원과 시민 역량을 결집해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도시이다(김기곤, 2013). 인권도시는 그동안 국가가 중심이 되어 왔던 인권보호와 증진의 의무를 지방정부가 함께 하겠다는 선언이자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권도시에 대한 전망은 훨씬 넓게 열려 있다.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은 도시가 만든 특별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도시운영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도시는 단체장이 정치적 입장에 의해 취소 선택될 수 있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인권도시를 향한 실천은 시민들의 실존 상황을 재확인하고 그들의 사회적 삶의 관계를 재조직하는 새로운 도시 기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대안적 도시모델이다. 이런 점에서 광주와 인권도시는 더욱 긴밀하게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인권의 현재적 지형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광주는 다음과 같은 공동체적 관점의 인권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아래 그림 참조).

<인권친화적 지역공동체의 인권체제>



‘인권도시 광주’는 인류 보편의 정신적 자산으로 등재된 5·18의 정신, 민주주의 역사, 문화도시로서 자산 등이 결합되어 있어서 상징성이 강하고, 인권 실천에 대한 당위성과 시민적 합의수준이 높다.

광주의 인권도시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논의되던 인권의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영역에서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인권도시와 인권행정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했고, 국제적으로는 UN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이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게 했다.

하지만, 인권도시 광주가 채워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그동안 인권보호

와 증진을 위한 규범, 제도, 조직을 구축하는 인권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실험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인권 제도, 기구, 정책 등을 확대 보강하고 이러한 장치가 시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IV. ‘인권도시 광주’의 정책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인권정책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결정이나 행동계획을 말한다. 인권에 기반한 정책은 도시운영에서 사회정책의 위상을 향상시킨다. 보편적 가치가 갖는 도덕적·윤리적 규범성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정책은 새로운 정치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잘 구성된 인권정책의 지속적인 실행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낸다. 정책은 항상 정치의 종속물이 아니다. 인권에 기반한 정책은 사회정의, 평등,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이를 존중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새로운 정책이 새로운 정치를 창출한다’는 정치학의 명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에서 인권정책은 광주가 자랑해 온 민주주의와 역사 창출력을 새롭게 추동시켜줄 수 있다.

앞으로 광주의 인권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삶의 인권화’이다. 이는 그동안 이룬 ‘인권의 제도화’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내걸 필요가 있다(아래 표 참조).

<광주의 인권도시 정책 방향>

인권의 제도화	→	삶의 인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제도와 장치의 구축 -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 및 위상 강화 - 인권도시 관련 제도의 신설 및 정비 - 인권문화 기반 형성을 인권교육 지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실질화와 행정의 인권화 - 시민 공감형 생활 속 인권증진 과제 실행 - 인권 약자의 인권증진을 최우선하는 정책 - 지속가능한 인권행정문화와 정책구조 창출
<p>▷ 사회적 약자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실질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p> <p>▷ 인권제도 강화, 시민참여 인권행정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도시 모델 창출</p>		

이러한 방향에 따라, 광주가 관심 있게 살펴야 할 인권의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첫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인권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시민적 권리(자유권)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사회차원의 실행 정책을 발굴해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의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권의 권리항목을 정립하고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관점의 인권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넷째,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협력적 관계 속에서 집단적으로 연대하여 실천해야 할 인권과제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제들을 정책화하고 행정차원에서 실행력으로 높여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구조적 장치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인권의 제도화 단계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인권제도의 확충이 필요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인권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문제를 정책화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인권정책이 광주시 전체 행정차원에서 골고루 수용될 수 있도록 인권담당관실의 정책 조정 기능 확대와 부서 간 정책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인권정책의 성과를 추적하고 이를 다른 지역의 인권도시들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 성과와 관련 행정 자료의 체계화 및 공유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다. 넷째, 인권도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시민 역량의 강화와 인권정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민간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V. 광주가 주목해야 할 인권의제는?

인권문제가 인권정책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은 대략 인권문제-> 인권이슈-> 인권의제-> 인권정책화-> 인권실천과제 등의 순서를 거친다. 인권의제, 즉 광주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행정 단위의 정책이나 시민사회 차원의 인권실천에서 관심을 기울려야 할 사항을 인권영역이나 핵심주제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분야별 인권영역으로 본 인권의제

인권의 주요영역(분야)을 설정해 각 영역별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의제를

산출하고 이를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아래의 표 <분야별 인권영역과 과제>를 참조할 수 있다.

<분야별 인권영역과 과제>

인권영역	인권분야	핵심정책	추진과제
인권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지원 ◦ 이동권 확대 및 시설물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참여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를 위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 장애인 노인 등 밀집거주지역 대상 ‘무장애시범마을’ 조성 -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장애 당사자 직접 참여 확대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 여성 1인가구 등 인권 취약 집단에 대한 안전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 참여 지원 강화 - 여성 1인가구 밀집 거주지역 안전장치 및 비상벨 설치
	아동·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에 기반한 아동복지사업 실천 확대 ◦ 청소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보장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운영 개선 및 종사자 인권교육 - 노동청소년 안심사업장 등록 및 고용업자 관리체계 구축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꿈의 공원’ 조성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사각지대 노인 복지 지원 강화 ◦ 노인 폭력, 학대, 방임 예방 및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및 긴급구호대상 노인 상시 돌봄체계 구축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 확대 및 피해자 전용 주거 확보
	이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을 위한 교통 및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광주 거주 이주민 자녀의 등록 권리 보장 ◦ 재외동포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 표기 대중교통 안내 및 공공기관 이주민 언어 서비스 - 무국적 아동의 등록 행정절차 지원 - 고려인 종합생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정치적·시민적 권리 보장 및 확대	생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도시를 위한 도시공간 및 방법 체계 구축
	신체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및 폭력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및 폭력 예방 및 신고체계의 정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문화도시로서의 창작 및 표현의 자유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지표 조사와 연계한 관련 항목 주기적 조사 및 관리 - 문화예술 창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과 비판이 자유로운 소통 광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형성 및 행정운영에 대한 참여권 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피해 최소화 ◦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최소화 및 엄격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침 및 매뉴얼 마련
	참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주민 등의 선거 접근권 및 참여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 전체 투표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피해 구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옴부즈맨의 활동 강화 및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및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강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장 및 확대	사회 보장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 복지행정 전환 ◦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행정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특별팀 상시 운영 - ‘광주형 복지 기준선’ 마련
	건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기능확대 및 공공성 강화 ◦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관리체계 구축 ◦ 국가폭력 및 인권피해자 통합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밀집지역 중심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 지역 정신보건 전수조사 및 자조모임 활성화 -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운영 활성화
	주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 적절한 최적주거 기준선 마련 ◦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주거공간에 대한 적정 기준 상향 - 노후 영구임대주택 등 시설 개선 지원
	노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 고용 개선 ◦ 생활임금 제도 단계적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 직속기관·출연기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 공계약 조례 제정을 통한 생활임금 확보
	교육권 (어린이·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문화 정착 ◦ 학업 중단·부적응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다문화자녀의 교육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조례의 이행 상황 모니터링과 결과 공개 - 대안교실 및 대안교육 기관 운영 - 다문화 부모·자녀 연계 통합 프로그램 지원

	교육권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학력 및 비문해자 대상 평생 학습 지원 ◦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교육-복지-취업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욕구에 따른 맞춤형 문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층 교육참여 현황 및 욕구 조사
	문화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중심의 시민 문화권 증진 기반 확대 ◦ 취약계층의 문화권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 ◦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보호 및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역형 문화공간 발굴 및 ‘문화방’ 개설 - 문화 소외지역 노인대상 ‘청춘 예술야학’ 운영 - 이주민 모국문화 향수 및 활동 지원
연대권의 보장 및 확대	환경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보 및 환경정책의 투명한 공개 ◦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도시 숲 조성 ◦ 기후변화 피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의 수립·집행 과정 등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 - 생활권 주변 공간 활용 도시정원 등 조성 - 취약 계층 노인 등 구호 및 의료 지원 전달 체계 정비
	평화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이해와 협력 위한 평화문화 확산 ◦ 사회적 갈등 평화적 해결 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문화 교육 및 연대 프로그램 운영 - 갈등관리 민관거버넌스 조직 구성

2. 공간적 측면에서 보는 인권의제: 공간의 인권화

일반적인 민주화 경로는 정치적 민주화-> 사회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를 거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가 결합되어 공간적 민주화로 발전한다. 공간적 민주화는 인권이 지향하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성을 높여준다. 공간적 민주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시가 인간의 물질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 욕구도 충족되는 삶의 공간, 사람을 위한 안전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공간으로 재구축될 수 있게 한다. ‘공간의 인권화’는 공간에 대한 접근권뿐만 아니라 평등한 이용권을 핵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을 동등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공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도심공원을 대상으로 무장애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돌길, 빗고을 산들길, 주요 산책로를 대상으로 무장애 구간을 조성할 수도 있다. 공간의 인권화는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누구나 똑같이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의 공간 설계와 운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5·18과 인권도시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5·18 관련 공간을 ‘인권도시의 문화화’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5·18 관련 기억의 현장과 역사성의 문화적 복원, 인권의 문화적 표현은 인권의 가치에 대한 주의력과 상징성을 높여 줄 수 있다. 문화라는 통로가 인권을 더욱 삶과 밀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은 본질적으로 좋은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권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을 인권과 결합된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광주교도소 부지, 국군광주통합병원, 505보안부대를 인권교육과 체험의 장과 같은 문화적 성격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때이다.

3. 인권행정에서의 인권의제: 통합적 인권행정

광주가 사람을 존중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인권도시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 생활 속에서 인권문화가 형성되고, 행정단위에서 실행력을 갖춘 인권정책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인권행정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인권정책이 도시운영 전체차원에서 활발하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인권행정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광주시 인권정책확대협의회’ (가칭)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모든 정책부서에서 관련 정책이 협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결과가 정책으로 수용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행정의 인권화, 인권 인지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권행정은 독립된 부서의 고유업무로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의 범위나 내용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인권정책은 통합정책의 관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인권부서-복지부서-문화부서-도시디자인 등이 상시적으로 정책적 조합을 통해 협력행정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4. 시민참여를 위한 인권의제: 인권의 주체화

인권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 모두가 인권의 옹호자가 되는 것이다.

삶과 지역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실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을단위에서 시민들의 인권실천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인권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을단위에서 운영해야 한다. 일상의 삶의 공간인 마을에서 시민들 스스로 인권을 이해하는 학습의 공간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이 마을의 공간이나 시설을 새로 조성하고, 마을을 대상으로 문화적 콘텐츠를 도입해 생활공간과 삶에 변화를 주는 공간 전략이라 한다면, ‘인권문화공동체 만들기’는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주민들이 함께 이해하고,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통과 연대의 과정이다. 이는 생활현장에서 시민참여에 기반한 인권실천이라는 점에서 인권주체 형성을 위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인권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웃 간의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이 마을 단위 다양한 실천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문학 강좌, 평생학습모임, 작은 커뮤니티 활동 등 주민참여 조직 속으로 인권이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5. 인권제도 측면의 인권의제: 인권제도의 확대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인권보호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장치를 정비 및 확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었을 때, 이러한 정책이 시민들의 인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는 제도인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도시 정책의 제도적 장치의 외연을 확대하고 각 제도들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행정집단 내부에서 인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의 방법, 내용, 범위 등을 고려해 제도 운영을 탄력적·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권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행정과 시민의 인권감수성, 인권에 기반을 둔 제3자의 평가-통제시스템, 시민조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밖에 지역차원에서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 인지적(human rights sensitive)

예산 편성(사회적 약자 인권을 위한 특정 인권 예산,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 개선 예산 등), 각종 행정서식 및 조례의 내용이나 표현 등에 대한 인권적 평가 및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6. 인권교류와 연대활동에 관한 인권의제: 인권도시의 교류

인권교류는 인권의 가치를 공감하며, 인류의 보편가치를 공동으로 실현하기 위한 협력적 실천이자, ‘인권도시 광주’의 가치와 경험을 다른 도시들로 확대함으로써 광주의 인권도시 모델을 확고히 정립해 가는 연대활동이다. 연대활동은 지역 내부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인권보호 협약, 인권 NGO 등과 실천 연대, 기업들의 인권경영을 위한 사회 협약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인권교류를 통한 연대활동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차원의 인권교류는 광주시 인권담당관실과 기초지자체의 인권부서간의 인권행정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광주시 전체 차원에서 인권정책이 통일성을 갖도록 하고, 인권담당관실의 축적된 인권행정 경험과 정보를 기초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내에서 인권도시를 지향하며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인권을 지향하는 도시 네트워크’(가칭)를 결성하여 도시의 인권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인권지표 개발 및 적용, 공무원 인권교육 교류, 사안별 인권정책 공동 추진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 차원에서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안정화시켜 지구적 차원의 인권정보 교환, 공동의 인권의제 채택, 사안별 인권과제 공동실천 등의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포럼을 통해 새로운 인권쟁점을 촉발시켜 광주가 지구적 차원의 인권 메시지를 발신하는 선도적 인권도시로 정립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VI. 맺으며 - 지방의회가 할 일은?

인권이 삶의 질, 시민의 행복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인권이 곧 좋은 삶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방의회는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정 전반에 인권

중심적 사고와 실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 수립, 사업 집행, 조직 운영, 예산 편성 등 도시운영 전반의 과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인권 의제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판과 제안, 협력과 견제 등의 능동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인권적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실천은 민주주의 기반과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분권과 자치, 그리고 시민참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 인권이 보호되고 확대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상대방을 지탱시켜주는 조건들이자, 각각은 형식과 내용 혹은 내용과 형식으로 긴밀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역의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을 특정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목적으로 시민의 인권을 실현해 가는 ‘인권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권력을 사용하여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인간적인’ 기획이다.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 역시, 정책에 대한 인권적 감시자이자 인권정책의 적극적인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인권실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연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요한 문제나 민원을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의원모임이나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의회가 갖는 시민적 대표성을 통해 시민사회와 각 기관을 포괄하는 지역인권위원회 형태의 인권증진거버넌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권도시 광주’는 특정 단체장의 일회성 도시 비전이나 도시 운영 전략으로 제약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한 영속적인 가치이자 도시 운영 원리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견인해 나가는 일이다.

<참고문헌>

- 김기곤 외, 2014, 『분야별 인권증진 정책 수립 연구』, 광주광역시.
- 김기곤, 2013, “‘열린공동체’ 관점의 인권도시와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전남대학교5·18연구소.
- 김왕배·김종우, 2012.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에 대한 탐색과 전망”, 『보건과 사회과학』 32집, 한국보건사회학회.
-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 조효제, 2008, 『인권의 풍경』, 교양인.
- 짐 아이프, 김형식·여지영 옮김,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2001, 인간과복지.

<부록 1>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4.9.1.] [광주광역시조례 제4414호, 2014.9.1.,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정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광주광역시 공무원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주·인권·평화도시”(이하, “인권도시”라 한다)란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들어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는 등 시 행정전반에 인권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시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의 함양과 함께 인권도시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증진 정책

제7조(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권증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증진의 기본이념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시책
4.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5.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6.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지수의 개발·시행) 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시 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교육 체계 구축) 시장과 교육감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며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나 시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4.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 제12조(인권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인권지표(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매년 수탁 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인권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인권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 의회, 시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증진의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체계 강화) 시장은 인권증진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인권백서 발간) 시장은 시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권백서”를 2년 마다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정책

제17조(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권도시 육성시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권도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고 5년 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정비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도시의 역사성
2. 인권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3. 인권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4. 각종 인권도시 육성 시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5. 인권도시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③ 육성계획은 제7조에 따른 인권증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시책반영)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인권 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차원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3.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19조(인권도시 광주현장) 시장은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을 포함,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권도시 현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20조(국제협력 강화) ① 시장은 세계적인 인권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화 추진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인권·평화복합센터 조성) 시장은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상시적 학습관, 인권체험관, 인권의체에 대한 연구소, 국내·외 활발한 교류와 연대를 위한 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권·평화복합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제22조(상징공간의 조성) 시장은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 등) 시장은 인권존중 및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에 대하여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제2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도시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인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인 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장과 시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인)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인)
3. 인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인)
4. 인권침해 관련 권리구제 국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인)
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인)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장은 상호 협의정신에 근거하여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제2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민간인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임기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위촉 해제 할 수 없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유 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인권에 어긋나는 활동으로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었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시 인권평화협력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14.9.1>

제30조(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시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옴부즈맨<신설 2013.4.1>

제32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권이 시민의 삶속에 실천되어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 ② 옴부즈맨은 7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옴부즈맨을 대표하는 상임 옴부즈맨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1명을 두며 그 외 옴부즈맨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③ 상임 옴부즈맨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 비상임 옴부즈맨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본조신설 2013.4.1>

제3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맨은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복무 위반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3.4.1>

제34조(직무) ① 읍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부즈맨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

1. 시 의회에 관한 사항
2.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4.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5. 그 밖에 신청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본조신설 2013.4.1>

제35(조사 및 결과 조치) ① 조사업무는 상임 읍부즈맨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결정은 읍부즈맨의 합의로 한다.

② 읍부즈맨이 조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읍부즈맨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읍부즈맨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신청인과 조사대상기관에 통지한다.

⑤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본조신설 2013.4.1>

제36조(지원) 시장은 읍부즈맨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권평화협력관 내에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두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4.1>
<개정 2014.9.1>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4.1>

부칙 <제4414호, 2014.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 ‘광주인권도시추진기본계획’을 제 7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권증진 기본계획(인권도시 육성계획)으로 본다.

부칙<20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2.7.5.] [전라남도조례 제3593호, 2012.7.5., 제정]

전라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내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향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지수 개발)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국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93호, 201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3>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0.7.9.] [전라북도조례 제3484호, 2010.7.9.,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정책”이라 함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조례 등의 연구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시책·방침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라북도와 시·군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1. 인권 최대한 보장의 원칙

2.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3.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

4. 도민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5. 인권 비용 공적 부담의 원칙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 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기본적 인권)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의 인권정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도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권리는 도민이 아니지만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제6조(인권옹호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권옹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계획
2.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새터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약자의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
3.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인권옹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의 인권정책에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인권옹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자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대한 조언

2. 인권보장과 인권옹호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
4. 인권센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기타 인권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그 업무로 선정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분과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② 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출석·발언의 요구, 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시, 군, 기타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7조(실비보상, 운영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② 도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 공무원 및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② 인권센터에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인권센터장은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인권센터의 재정)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인권교육 실시) 도지사는 공무원 기타 공공기관의 구성원 등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1.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및 인권관련 기관은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2조(인권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인권센터장은 제2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권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484호, 2010.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의 시기)

이 조례 제7조가 규정하는 전라북도 인권옹호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2014 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방의원 워크숍

| 인 쇄 | 2014년 9월

| 발 행 | 2014년 9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주 소 | (501-85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아모레퍼시픽 5층

| 전 화 | (062) 710-9716 | F A X | (062) 710-97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350-9 9335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